저장 : 신지은 / 사회복지과 (2025-05-29 13:27:14)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1040
등록일자	2025. 1. 8.
결재일자	2025. 1. 8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희망복지팀 장	사회복지과 장	복지국장	부시장	
신지은	조문주	주정운	옥미연	대결 2025. 1. 8. 정석원	
	1		1	I	1



협조	禾		

# 2025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

## 요 약 서

### ■ 사업목적

공적지원제도 대상자 탈락(제외), 중한 질병·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,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제도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더 포용적,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

■ **사업예산:** 12,000천원(시비 100%)

### ■ 지원내용

- •생계비: 긴급복지지원금 기준 50% 지급, 최대3개월 지원
- 의료비: 최대 300만원내 지급, 1회 지원

### ■ 선정기준

- ·소득: 중위소득 75%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(1인 1,794천원)
- 일반재산: 152,000천원 이하
- · 금융재산: 1인 8.392천원, 2인 9.932천원, 3인 11.025천원, 4인 12.097천원

### ■ 기대효과

- 적극적인 복지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 복지 체감도 향상
-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,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도모

## 사회복지과 (희망복지팀)

# 2025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

정책결정 사전 점검표					
★ 반드시 방침(보고)서 첫 페이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항 목		세 부 내 용	점검 완료	해당 없음	
	규정/근거	관련 법령, 조례, 규칙 및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등			
일 반	추진경위	공약사업, 전략사업, 지시사항 이행사업 등 사업추진 배경 (공적지원대상자 이외 한시적으로 생계·의료비 지원 자체 시책)			
사 항	예산확보	□ 국비 □ 도비 ■ 시비 □ 기타 ( )			
	홍 보	<ul><li>□ 보도자료</li><li>□ 소식지</li><li>□ SNS</li><li>□ 설명회</li><li>□ 기타 (</li></ul>			
절 차 검 토	절차검토	□ 일상감사       □ 투자심사       □ 용역심사         □ 공유재산심사       □ 타당성검토       □ 시의회 승인         □ 영향평가       □ 성인지적 관점 (양성평등 실현 등)			
	주민 의견수	렴 및 참여방안을 검토했습니까?			
	주민참여	□ 토론회 □ 공청회 □ 공모 □ 설문조사 □ 위원회 □ 기타 ( )			
참 여 소 통	전문가 자문( 전 문 가 자 문	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이행완료			
	이해관계인 <u>'</u> 갈등관리	및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했습니까? □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□ 민원 발생 ( 갈등요소 : )			
	협치대상	□ 관련기관 ■ 관련부서 □ 관련단체 □ 기타			
	협치방법 	■ 정보공유 □ 공동주관 □ 민간위탁 □ 기타			
협 치 협 업	타 기관, 무/ 협치대상(명	서, 단체 등과의 협업 검토 및 협의를 완료했습니까? 칭) 협 치 내 용	•		
	사업추진을 통해 구현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? ※ 중복 체크 가능				
니원전		□ 인권보호 □ 근로, 생활환경 안전 ■ 보건복지 □ 노동권 보장			
사회적 가 치	■ 사회통합( □ 일자리 청	(사회적약자 기회제공) □ 대기업-중소기업 상생협력 당출 □ 공동체 복원 □ 지역경제 공헌 □ 기업원	<b>≥</b> ⊒1		
		3울 □ 등등세 속원 □ 시약경제 등인 □ 기합원  속가능성 보전 □ 시민참여	<u>1</u>		
	□ 기타 공공	공성( )			

2025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

저장 : 신지은 / 사회복지과 (2025-05-29 13:27:14)

- 현행 법령과 공적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지원 등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생계비, 의료비를 일시 지원하고자 함(2007년 최초 시행)
- **제도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폭넓게 보호하여** 복지안전망을 섬세하게 구축하고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극복

# 사업개요

■ 추진근거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4조(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)
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등
「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

■ 사업목적: 현 법령과 공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한시적 생계·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 극복하고자 함

■ **사업예산**: 12,000천원(시비100% / 301일반보전금, 02사회보장적수혜금)

■ 지원실적

구분	지원건수	지원액(천원)	비고
2023년	7(의료비7, 생계비0)	12,000	100% 집행
2024년	8(의료비8, 생계비0)	12,000	89% 집행

# Ⅱ 지원기준(내용)

구분		생계비	의료비		
지원대상		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적용	긴급복지지원 외 중한질병·부상 대상자 (정신질환, 재활, 요양 등 포함)		
		※ 타 사업(긴급복지지원, 기초생활수급 등) 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상자 제외			
	소득	중위소득 75%이하 실 생계 곤란자(1인 1,794천원)			
선정 선정	일반	152,000천원 이하 1인 8,392천원, 2인 9,932천원, 3인 11,025천원, 4인 12,097천원 등			
건 78 기준	금융				
고외 사업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의 위기상황 → 자체 내부검토를 거쳐 지원 가능 (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					
지위	생계비	・생계비(1인 365,250원 / 2인 602,500・ ・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% 지원 ・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다			
지원 기준 의료비		•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•정신질환, 알콜치료, 입원환자(간경비, 요양비, 재활비 포함), 심리상담센터 검사 및 치료비 지원, 압류된 재산으로 재산권 행사 불가 등 •의료기관으로 지급 원칙			

#### ■ 지원절차

1. 현장확인서 및 구비서류 등은 긴급복지지원 절차와 동일하게 구비

저장 : 신지은 / 사회복지과 (2025-05-29 13:27:14)

- 2.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가 있는 경우 → (최근 1년이내)소득재산 상세내역 확인공적자료 및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→ 공적지원제도 신청과 동시 틈새지원 신청, 확인
- 3. 적정성심사는 사후조사 이후 신청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생략하나 허위, 부정한 신청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

# Ⅲ 사후관리(민간지원연계)

■ 저소득틈새지원사업 지원종료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, 공적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



-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연계
- · (민간)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, 대한적십자 희망풍차,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기가정지원사업 연계, 이웃돕기 성금연계 등

# Ⅳ 기대효과

-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, 섬세하고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도모
- 적극적인 복지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 복지 체감도 증진. 끝.